

2026년 전산세무2급 정보표																									
페이지	수정 전	수정후																							
280	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	해당 납부세액에서 5천원을																							
292	재고품 등의 매입세액	재고품 등의 납부세액																							
354	② 부당과소(초과환급): 납부세액 × 20%	② 부당과소(초과환급): 납부세액 × 40%																							
363	확정신고시 10,000원을 납부세액에서	확정신고시 5,000원을 납부세액에서																							
441	①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금액	①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
441	2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	고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441	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	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
444	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된다	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된다(사업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
449	월정액급여 210만원, 총급여액이 3천만원	월정액급여 260만원, 총급여액이 37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
458	② 사망할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: 4%	② 사망할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: 3%																							
481	법인세 개정으로 11%로 조정예정	법인세 개정으로 11%로 조정예정 : 2027.1.1.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
484	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	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																							
489	1. 공제가능금액 = ① + ② + ③ + ④ + ⑤	1. 공제가능금액 = ① + ② + ③ + ④ + ⑤ + ⑥, ⑥ 자녀*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(최대 100만원) 상향 *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, 동거 입양자, 위탁아동 및 재혼자의 자녀 -단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(최대 50만원) 상향																							
490	2. 공제한도액 그림으로 대체	<table><tr><th colspan="2">총급여</th><th>7천만원 이하자</th><th>7천만원 초과자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<td>300</td><td>250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자녀 1명</td><td>350</td><td>275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자녀 2명 이상</td><td>400</td><td>300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추가 공제한도</td><td>전통시장</td><td rowspan="3">300</td><td>200</td></tr><tr><td>대중교통</td><td rowspan="2">-</td></tr><tr><td>도서공연등</td></tr></table>	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기본공제 한도		300	250	자녀 1명		350	275	자녀 2명 이상		400	300	추가 공제한도	전통시장	300	200	대중교통	-	도서공연등
총급여		7천만원 이하자	7천만원 초과자																						
기본공제 한도		300	250																						
자녀 1명		350	275																						
자녀 2명 이상		400	300																						
추가 공제한도	전통시장	300	200																						
	대중교통		-																						
	도서공연등																								
490	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(대학원 포함) 및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험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(취학전 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제외)	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(대학원 포함) 및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험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(취학전 아동의 학원·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제외),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 취득과정 수업료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																							
496	④ 학원수강료(취학 전 아동의 경우는 제외)	④ 학원수강료(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가능)																							
507	월정액급여 210만원, 총급여액이 3천만원	월정액급여 260만원, 총급여액이 37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
621	부도발생일 문단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33	2. [부가가치세신고서] 작성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44	2. [부가가치세신고서] 작성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57	2. [부가가치세신고서] 작성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70	2. [부가가치세신고서] 작성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85	2. [부가가치세신고서] 작성 하단에 내용 추가	전자신고세액공제 5,000원으로 개정 : 2026년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687	1. 일반전표입력 : 잡이익 10,000	1. 일반전표입력 : 잡이익 5,000																							
	1. 일반전표입력 : 미수금 1,000,000	1. 일반전표입력 : 미수금 995,000																							